

# 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9년 2월 9일 부천시장

나. 회부일자 : 2009년 2월 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5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09. 2. 20.) 상정 및 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청소과장 서근필)

### □ 제안이유

-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의 정비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면제 규정을 삭제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이 조례의 적용범위 및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나.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과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및 장려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다.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 및 장려사업장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 라.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마.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과 음식물류폐기물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 바.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 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및 세입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및 제15조)
- 아.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 자.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과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및 제18조)

###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답 변
<p>○음식물쓰레기 수분함량을 25%미만으로 감량하고 부산물의 수분함량40%로 감량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있는지 또한 시행되고 있는지?</p> <p>○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한 실적이 있는지?</p> <p>○</p>	<p>○ 현실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 하겠음</p> <p>○ 현재까지 없음</p>

###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제372호
의결 년월일	2009. 2. 23. (제150회)

제안년월일 : 2009. 2. 20.

제안자 : 건설교통위원장

## 1. 수정이유

- 2008년 11월 27일 부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었으나 동 조례에서 인용한문구가 개정 전 조항으로 조항 변경이 요구됨

## 2. 주요골자

- 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제14조 제1항의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를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로 수정하고, [별표 2]의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 별표6”을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제2항 별표4”로 수정하고자함.

# 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천시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14조 제1항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를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로 수정하고, [별표 2]의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 별표6”을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제2항 별표4”로 수정하고자함

## 신·구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1조 ~ 제13조 생략</p> <p>제14조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다.</p> <p>제14조 ~ 제18조 생략 [별표2]</p> <p>1.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를 사용할 경우의 산정방법: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 <u>별표6</u>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및 산정방법을 적용함.</p>	<p>제1조 ~ 제13조 원안과 같음</p> <p>제14조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다.</p> <p>제14조 ~ 제18조 원안과 같음 [별표2]</p> <p>1.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를 사용할 경우의 산정방법: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제2항 <u>별표4</u>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및 산정방법을 적용함.</p>

[수정안 포함]

## 부천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천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 및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수·축산물류폐기물, 조리 전에 다듬고 버리는 식품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하는 음식물류폐기물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에서 같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신고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다방 및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

한다)은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3. “음식물류폐기물감량장려사업장”이란 제2호에서 정한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 이외의 모든 중·소형 음식점을 말한다.
4. “음식물류폐기물감량화”란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열·건조하게 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하게 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폐기물재활용”이란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용기”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폐기물만을 별도로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7.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관할 구역 안의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시장은 음식물류폐기물감량화 및 음식물류폐기물재활용을 위하여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전 지역을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으로 정한다.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 법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별표 1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할 것
2. 음식물류폐기물은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하는 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할 것
3. 음식물류폐기물은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하지 말 것

제6조(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게 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칙 제10조제4호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의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건조하게 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하게 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발생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류폐기물감량장려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법) 시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음식물류폐기물감량장려사업장에게도 제6조의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에 준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게 하거나 감량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사업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3일 이내에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연간 발생한 내용 및 처리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신고서와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또는 위탁을 말한다)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 또는 시설을 변경한 경우

제9조(음식물류폐기물감량장려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폐기물감량장려사업장의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시장이 추진하는 음식물류폐기물감량화 및 재활용을 시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자체적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방법을 주민에 알리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폐기물이 적정하게 분리되어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②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이 완료되면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고 대 시민홍보를 위하여 시민단체 등에게 민간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류폐기물을 담은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는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용기는 수거와 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도

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음식물류폐기물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음식물류폐기물공동보관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음식물류폐기물공동보관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 및 운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축되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의 음식물류폐기물공동보관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음식물류폐기물공동보관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 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중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분리하여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이하 “수집등의  
대행업체”라 한다) 계약을 다음 각 호의 자와 체결하고 음식물류폐기  
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수집등의대행업체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25조제5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중에서 사료화·퇴비화를 전문으로 하는 폐기물중간처리업자
3. 「사료관리법」 제8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사료제조  
업 및 비료생산업 등록을 한 자
4. 음식물류폐기물을 사료 및 퇴비로 재이용하는 농·축산가
5.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의 설치자 또는 운영자

③ 수집등의대행업체는 음식물류폐기물에서 오수 및 악취가 누출되  
지 아니하도록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차량이나 밀폐된 용기에 담아 운  
반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하고, 매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 수집된 음식물류폐기물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부산물을 폐기물재활용  
신고자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운영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등의대행업체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 구역 안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

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집등의대행업체의 시설이 법령 위반 등으로 영업을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음식물류폐기물감량장려사업장의 수집·운반 수수료는 사전에 수집·운반업체와 음식물류폐기물감량장려사업장 상호 간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별표 2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음식물류폐기물감량장려사업장이 부담하며, 처리수수료는 수집·운반업체에서 부담한다.

③ 수집·운반업체는 분기별로 음식물류폐기물감량장려사업장과의 위탁계약현황을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세입처리 등) 시장이 음식물류폐기

물을 수집·운반·처리한 때에는 수수료를 시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에 따라 수집·운반·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수집등의대행업체의 수입으로 한다.

제16조(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음식물류폐

기물자원화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시설을 시공한 자 또는 그 밖에 관리 및 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별되게 실제의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은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및 음식물류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법·영·규칙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제5조 관련)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음식물류 폐 기 물	식품쓰레기 및 조리 전·후 음식찌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물질(플라스틱, 유리, 금속 등)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용기에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배출할 것</li> <li>·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 등은 물로 행구어 배출할 것</li> <li>·비닐·병뚜껑·패각류 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이물질은 반드시 제거한 후에 배출할 것</li> </ul>

[별표 2]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산정방법(제14조제2항 관련)

1.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를 사용할 경우의 산정방법: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제2항 별표 4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및 산정방법을 적용함.
2. 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할 경우의 산정방법: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정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평균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로 산정할 수 있음.
  - 가. 공동 및 단독주택의 경우: 쓰레기봉투 가격에 포함하여 산정
  - 나. 음식물류폐기물감량 의무사업장의 경우: 킬로그램당 50원 ~ 85원으로 산정
  - 다. 음식물류폐기물감량장려사업장의 경우
    - 기본료: 1일 20리터 쓰레기봉투 사용가격을 기준하여 연동제로 별도고시
    - 기본량 초과 시: 킬로그램당 50원 ~ 85원으로 산정
3. 부천시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을 이용할 경우: 음식물류폐기물감량장려사업장 등과의 수거업체 계약물량 × 킬로그램당 처리비용(이 경우 킬로그램당 처리비용은 별도기준을 고시함.)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횟수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단위: 만원)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 상
1.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조례 제5조 관련)			
가. 음식물류폐기물을 시장이 정한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5	10	20
나.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하는 경우	5	10	20
2.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조례 제8조 관련)			
가.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처리 또는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20	50	100
나.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 및 변경신고서, 연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음식물류폐기물 관리대장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0	20	30
3. 공동주택의 음식물류폐기물공동보관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용기의 설치 및 그에 대한 개선·대체 등의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조례 제12조 관련)	100	300	500

[별지 제1호서식]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이행(계획·계획변경)신고서							처리기한 즉시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사업장 규모	집단급식소: 1일평균 연급식인원				명		
	음식점: 객석·객실 합계면적				m <sup>2</sup>		
	대규모점포: 사업장면적				m <sup>2</sup>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장면적				m <sup>2</sup>		
	호텔·콘도: 객실수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				kg/월			
자가감량 처리계획	감량처리				부산물처리		
	처리방법	처리 능력	설치 신고일자	처리량	부산물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자
		kg/일		kg/일	kg/월		
자가 재활용 계획	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kg/월						
위탁 재활용 계획	위탁 재활용량	재활용 방법	위탁업소명	업종	위탁업소 주소·전화		
	kg/월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p>「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제8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이행(계획·계획변경)신고서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p> <p>부천시장 귀하</p>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							
상호 (명칭)	성명 (대표자)		사업장 주소				
처리 구분	처리 예상량	처리 방법	설치 신고일	재활용 장소	위탁 업소명	위탁업소 주소(전화)	
자가 감량	kg/월						
자가 재활용	kg/월						
위탁 재활용	kg/월						
<p>「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제8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이행계획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부천시장 (직인)</p>							

[별지 제2호서식]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 관리대장

사업장명:

(단위: Kg)

연월일	발생량	자 가 감 량			재 활 용			
		자 가 처리량	자가감량 방 법	처리량 누 계	재활용량	재활용 방 법	재활용자	재활용량 누 계

「작성요령」

1.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시 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함.
2. 자가감량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감량방법은 탈수·건조·발효·발효건조·소멸화 등으로 기재하여야 함.
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방법은 퇴비·사료 등으로 기재하고, 재활용자는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함.

[별지 제3호서식]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서

제출자 또는 신고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사업장 규 모	집단급식소: 1일평균 연급식인원			명			
	음 식 점: 객석·객실 합계면적			m <sup>2</sup>			
	대규모점포: 사업장면적			m <sup>2</sup>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장면적			m <sup>2</sup>			
	호텔·콘도: 객실수			실			
연간 음식물류쓰레기 총 발생량				Kg/년			
처 리 실 적							
자가 처리	감량처리	처리시설 능 력 ( Kg/일 )	연 간 처리량	부 산 물 처 리			
				부 산 물 발 생 량	처리방법	처 리 자	
자가재활용의 경우		위탁재활용의 경우					
재활용	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위탁량	재활용방법	업 체 명	업 종	주소(전화)
위와 같이 음식물류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날인)			
부 천 시 장 귀하							

